

# 임시 이사회 회의록

- 개최일시 : 2014년 4월 1일 화요일 14:00 - 15:30
- 개최장소 : 이랜드빌딩 1층 회의실
- 총이사수 : 6명
- 출석이사 : 4명(이경준 이사, 이태웅 이사, 윤형주 이사, 박영희 이사)

이경준 이사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임시 이사회가 적합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 <제 1호 의안> 법인 자산의 타 법인 단기대여 건

- ▶ 이경준 이사장은 본 법인의 보통 자산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 단기 대여하는 건에 대하여 상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하도록 하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금년 이랜드복지재단의 사업비가 단기적으로 부족하여 이랜드재단에 단기대여를 요청해 왔음을 설명하고, 단기대여의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다. 단기대여 기간은 6개월이며 금액은 1,200,000,000원 차입조건은 무상대여임을 부가 설명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는 단기차입 진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묻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이랜드재단 정관 제2장제6조제3항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,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, 법령에서는 단기차입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, 아래의 이랜드재단 규정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설명하다.

- 아 래 -

## 4. 재무회계규정

- 제3장제9조(일시차입금) ① 총괄사무국장은 지출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.  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일시차입금은 수입금이 수납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- ▶ 윤형주 이사는 대여 이후에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를 질의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대여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단기대여를 하는 것에 대해 의의가 없음을 표하며 단기대여에 동의하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단기대여 이후에도 고유목적사업 및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답변하다.
- ▶ 박영희 이사가 제청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는 추후 기한 내 대여금의 회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단기대여에 대한 사항에 제청하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단기대여금의 관리 및 회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을 약속하다.

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,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.

### <제 2호 의안> 2014년 법인 추경예산(안) 심의 건

- ▶ 이경준 이사장은 이사회에 2014년 이랜드재단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영일 사무국장에게 설명하도록 하다.
- ▶ 정영일 사무국장은 2014년도에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랜드복지재단으로의 단기차입금 발생 및 출자금 회수, 인건비, 운영비, 대여금, 이월금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경예산 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랜드재단 2,746,226천원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을 설명하다.
- ▶ 이경준 이사장은 정영일 사무국장의 설명을 토대로 2014년 법인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이사들의 의견개진과 심의를 구하다.
- ▶ 박영희 이사는 제출한 추경예산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어 추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법인에 대한 추경예산(안) 승인에 동의함을 표하다.
- ▶ 이태웅 이사가 동의 제청하다.

이에 이경준 이사장은 본 건 2014년 법인 추경예산(안) 심의 건이 결의되었음을 선포하고,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하다.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.

폐회시각은 15시 30분

2014년 4월 1일

재단법인 이랜드재단

이사장 이 경 준 (인)

이 사 이 태 웅 (인)

이 사 윤 형 주 (인)

이 사 박 영 희 (인)